

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(구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)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6. 5. 29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- 아 래 -

회사명 (대표자)	등록번호	등록취소일	소재지	관련 법률
(주)티옴투자 파트너즈 (김승준)	2022-400	2026.5.26.	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4길 21,2층 (신사동)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2호 (법률 제19504호)
(주)에프브이 인베스트먼트 (조상원)	2019-326	2026.5.26.	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0 금척타워 6층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2호 (법률 제19504호)
트루윈창업 투자(주) (신동훈)	2010-219	2026.5.26.	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946, (주)강원테크노파 크 100호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2호 (법률 제19504호)
리엔인베스트(주) (이기택)	2018-302	2026.5.26.	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20 (삼성동, 삼예빌딩 5층)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12호 (법률 제19504호)

끝.